

# 私立大學의 財政, 支援과 自立

高 聖 三

(中央大 經營學科)

## 1. 序 言

私立大學의 運營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건전한 財政과 이를 뒷받침하는 財源의 확보에 관한 것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최근 大學의 규모가 大型化 되고 이에 따라 대학 財政의 많은 부분이 학생 증원에 따른 受容力 확충 등 施設費의 投資와 막중한 人件費의 부담으로 사립대학의 재정적인 기반은 극히 취약해진 실정에 있다. 더욱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학생들의 登錄金의 引下 및 課稅의 加增한 주장과 獎學 및 福祉施設 등의 대폭적인 확충 요구, 敎職員 등의 증가와 處遇 改善 요구 등에 의하여 취약하기만 한 사립대학의 재정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본래 大學의 財政은 大學教育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된다. 대학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곧 대학교육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탄과 빈축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도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못한 데서 교육과 재정의 순서가 바뀌고, 教育 優先의 學事政策이 財政 優位의 經營 主導로 전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制度가 確立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대학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財源의 確保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이러한 사립대학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大學財政의 合理的인 運營方案과 大學財政의 財源의 確保方案에 대하여 현행 法制度의인 측면과 實質的인 財政 運營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연구·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制度的 측면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대학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인 면에서는 우선 사립대학과 관련된 '私立學校法 및 同施行令',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특례 규칙'을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분야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大學財政 運營의 自律性 提高

大學의 自律性·自主性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대학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의 운영은 각 대학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財政·會計 분야에서의 자

〈표 1〉 私立學校法 가운데의 財政·會計部門 規程 現況

條	文	內 容	備 考
第28條(財産管理)	①항	基本財産 變動事項 許可	감 독 청 大統領令으로
	②항	學校財産 중 메도·담보 불가사항 결정권	
第29條(會計의 區分)	①항	校費 부속병원 회계의 세입·세출사항 결정권	大統領令으로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⑥항		
第30條(會計年度)			
第31條(豫算 및 決算의 제출)	①항	豫·決算의 提出要求權	감 독 청
	②항	부당編成 是正要求權	감 독 청
第32條(財産目録 등의 備置)	①항	재산관리장부, 서류종류, 式 결정권	文 教 部 令
	②항		
第33條(예산편성요령·회계규칙)		예산편성요령, 회계규칙, 예산회계 필요사항 결정권	문교부장관

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곧 재정 운영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收入源과 支出 構造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즉 學生 納入 金의 수준이나 支出 構造의 자율적인 결정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私立學校法의 財政·會計分野를 보면 〈표 1〉과 같이 6 개 조항 중 5 개 조항이 關係法律 및 同施行令과 文敎部 예규 등에 의한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부분이 작년 10 월중 문교부의 立法 豫告에 의하여 그 改正 試案이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바, 이의 보완·개정이 금년중에는 꼭 이루어져 私學 발전의 轉機가 되었으면 한다. 私立大學의 自律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은 각 사립대학의 完全한 自律的 決定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關係條文; 私立學校法 제31조, 제33조).

대학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豫算 編成 및 執行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31조에서는 同條 제1항에서 學校法人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 전에 豫算을, 每 會計年度 終了 후에는 決算을 監督廳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동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3조에서는 학교 법인의 예산 편성 요령, 회계 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敎部長官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립대학의 예산은 전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지시하에 그 編成 및 執行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1조 2항의 규정 중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의 不當한 基準이나 根據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립대학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또한 동법 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요령, 회계 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재까지 각 대학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大學敎育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施設 投資에 역점을 둘 것인가 혹은 敎授 充員 등의 人力 投資에 역점을 둘 것인가 등의 결정은 大學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毒素條項을 완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보완함으로써 각 大學의 豫算 編成 및 執行의 獨立性이 완전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豫算 編成 및 決算 確定時에 學校法人 으로부터의 獨立性 보장과 敎授參與의 制度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關係條文; 제31조, 제29조).

현행 私立大學의 豫算 및 決算에 관한 관계 규정은 學校의 長이 학교의 豫算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理事會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및 결산에 있어 학교의 장인 總長이나 學長에게도 학교 법인에서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예산이나 결산의 최종적인 확정·결정은 法人理事會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자주성이나 자율성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산 편성이나 결산의 확정시 실제 學校行政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平敎授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시정·보완하여 평교수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平敎授會議의 의결을 거치거나 중견의 財務委員會를 발전적으로 확대·부활하여 그 運營의 合理化를 도모한 후 同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이 옳다고 본다.

## 2) 財政 및 會計의 完全公示制度의 導入(關係條文; 私立學校法 第31조, 第32조, 同施行令 第3조)

사립대학의 재정 회계 부문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는 처음 1960년대 초 사립대학은 '非合理的인 運營體'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사학 자체에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감독 관청의 사학에 대한 불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학생들의 학교 예산과 결산의 公開, 나아가 豫·決算에의 參與 등의 요구도 이러한 대학 당국에의 불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不信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私立大學에도 公認會計士(C.P.A)에 의한 外部監査制度를 도입하여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이 옳다고 본다. 또한 현재 收益事業 부문에 대한 貸借對照表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學校法人의 전체 貸借對照表

를 공고하도록 하고, 公告時에는 監査人의 명칭과 감사 의견을 병기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건전한 會計 處理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제32조의 財産目錄 등의 비치 규정도 보완하여 항시 學校 및 法人事務所에 비치·공시하도록 공시 조항을 추가하고, 이 경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도 함께 비치·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특례 규칙(이하 특례 규칙이라 함)의 修正·補完

각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運營의 合理化 및 效率性을 높이고 건전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完全公示制度를 도입해야 함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私立大學의 會計處理 基準이라고 할 수 있는 특례 규칙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각 사립대학의 회계 처리 기준을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의한 企業會計 基準과 마찬가지로 客觀性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고, 동시에 公認會計士 등 外部監査人의 감사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企業會計制度의 導入(관계 조문; 등 특례 규칙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2조)

現代에 있어서의 모든 회계 처리는 不正이나 誤謬들을 자동적으로 발견 또는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제도 등을 감안한 複式簿記制度를 도입·채택하고 있다. 특례 규칙은 동 규칙 제15조 1항에서 모든 회계 처리는 객관적인 資料와 證據를 기초로 複式簿記原則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財務諸表에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眞實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會計情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도록 동 제1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去來는 現金主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私立大學에 있어서 私立大學의 一定 時點에 있어서의 精確한 財務狀態와 一定 期間에 있어서의 精確한 運營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회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비용을 發生主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회계 처리에 의한 私立大學의 財務狀態를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同 規則 제30조, 제32조 2~5 항을 수정·보완하여 각 私立大學의 올바른 재무 상태와 운영 상태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減價償却制度의 채택(關係條文; 특례 규칙 제30조)

사립대학의 올바른 財務狀態를 알고 또 일정 기간의 運營狀態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固定資產에 대한 減價償却制度를 도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 동 특례 규칙 제30조에서는 法人會計와 學校會計에 속하는 고정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資產의 機能이 소멸되어 폐기 처분한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資產의 감소와 基本金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會計處理方法은 현재 각 大學이 소유하고 있는 實驗實習 機資材 등의 막대한 고정 자산의 장래 제조달 자원의 확보 등을 위한 감가상각 본래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수정·반영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3) 退職給與 充當金 등 負債性 充當金の 設定 明文化

私立學校 敎職員 등에 대한 年金法이 1973년에 제정·실시되고 있지만 현재 각 私立大學은 年金 이외에 退職時 별도의 退職金 支給規定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은 장래 교직원들의 퇴직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각 大學의 義務에 해당되므로 건전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決算時 退職給與 充當金을 설정·반영하여 올바른 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私立學校 敎職員에 대한 年金法의 制定 취지를 고려하여 각 私立大學의 退職金 支給制度도 발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財産管理 規定의 修正·補完(關係條文; 第28條)

學校教育을 위하여서는 人的 資源도 필요하겠으나 物的 資源으로 基本財産 施設이 그 根幹을 이룬다. 그러나 학교 법인 재산은 監督廳의 許可를 취득함으로써 基本財産의 용도가 바뀌고

담보에 제공되며, 매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독청에서는 法 制定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아니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학교 재단의 運營上의 問題解決 차원에서는 허가될 수도 있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私立學校法 제 28 조 1 항의 條文은 허가만 받으면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는 형태에서 原則적으로 不可能하다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감독청에서는 公共性의 양양과 安全性 확보 등을 위하여 同條文을 허가 조건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改正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28 조 2 항의 경우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직접 사용되는 財産으로 나열된 각 항 중 4 항의 '實習研究施設'은 具體性이 희박하고 異見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부속 병원을 明文化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명시되지 않는다면(上記 條文의 反對 解釋을 가정하면), 學校教育에 직접 명시되지 아니한 재산이면 運營上의 이유로 賣渡·담보될 것이므로(예로 의대 부속 병원은 의대생들의 직접 실험장이면서 교수·연구 시설이기도 하다), 이를 매도·담보할 수도 있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安定的 勉學 雰囲気 조성과 大學의 教育 機能의 중단없는 수행을 위하여 방지하여야만 하며, 따라서 제28조 2 항에 부속 병원을 明文化하여야 한다.

5) 收益用 基本財産 最低基準額의 上向 調整 (關係條文; 學校法人의 學校經營財産基準令 제3조 및 제6조, 同施行規則 제3조)

현행 大學의 財政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충분한 財源의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의 등결, 나아가 인하 등의 주장은 가뜩이나 취약한 大學財政을 극히 위태롭게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私立大學의 財政 收入 중 약 80%가 학생 납입금으로 되어 있으며 국고 지원금이나 법인 전입금은 극히 미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産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수익용 기본 재산의 최저 기준액인 학생 정원 1인당 200,000 원을 최소한 2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또한 학교 財政 收入의 일정 비율(최소한 10%) 이상을 법인의

전입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實質的인 大學財政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 大學財政의 現況과 問題點

大學財政의 現況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재정의 구성 요소인 收入과 支出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1) 收入

우리나라 高等教育의 약 75%를 담당하고 있는 私立大學의 財政에 있어 그 수입의 대증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納入金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國庫支援金이나 維持法人인 學校財團으로부터의 支援轉入金은 매우 영세한 실정에 있다. 1987 년도를 기준으로 私立大學의 教育費 歲入 現況을 보면 운영 수입 중 약 80%가 학생 납입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입 대체 항목을 차감한 후의 순수한 운영 수입에 대한 학생 납입금의 비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유지 법인인 학교 재단으로부터의 轉入寄附金은 私立大學의 전체 전입 기부금 비율의 약 1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私立綜合大學에서의 전입 기부금 비율은 약 5%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日本의 私立大學 財政 收入의 財源別 現況을 살펴 보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약 22.5%이고 학생 납입금에 대한 의존도는 약 60% 정도이다. 또한 美國의 경우 私立大學의 財政 중 약 18.4% 정도를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지원 부담해 주고 있으며, 학생 납입금의 의존도는 약 38.7% 정도로 되어 있다. 이처럼 日本과 美國의 경우를 종합해 볼 때 학생 납입금의 의존도는 약 40~60%, 국고 지원금 및 기부금은 약 20%, 학교 법인의 지원금은 약 20%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財政이 얼마나 많이 學生 納入金에 의존하고 있는가 또한 그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과 국방이라는 선결 조건의 해결과 함께 私立大學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이 반드시 뒤따

라야 할 것이며, 私立大學도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방법에 대해 부단한 연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본다.

##### (2) 支出

大學財政의 支出은 크게 나누어 經常的 支出과 資本的 支出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경상적 支出은 다시 人件費와 運營費로 구분된다. 인건비는 교직원에 대한 給與 및 諸手當, 기성회비에서 지출되는 연구비 등의 인건비를 말하며, 운영비는 인건비와 학생 경비 및 자본적 支出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大學의 總運營費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全體 大學 平均이 45.7%, 全體 私立大學 平均이 4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입 대체 항목을 제외한 후 순수한 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私立大學의 경우 國立大學보다 인건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는 教授의 充員率이 낮거나 教授의 報酬 수준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私立大學의 管理運營費는 평균 약 9.2%, 學生 經費는 19%를 나타내고, 國·公立大學의 경우 學生 經費는 14.1%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 私立大學의 경우 獎學金과 實驗實習費 등 학생 경비의 지출이 國·공립대학에 비하여 財政運營上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학금의 경우 종전 卒業定員制下에서 실시되었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지급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私立大學의 財政에 있어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土地買入費, 建物買入費, 機械器具 및 圖書購入費 등 고정 자산의 취득에 관련한 자본적 支出은 私立大學의 경우 전체 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적 支出의 과중한 부담은 곧바로 大學財政의 압박을 가져오는 사항으로 이러한 자본적 支出에 상당하는 재정 支出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나 학교 법인의 별도의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2) 大學財政의 改善方案

현재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등록

금 인상은 당분간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대학 재정의 개선 방안에는 우선 收入의 확대 측면과 반대로 支出의 억제 등 經營合理化에 의한 재정 확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각각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學生登錄金の 引上과 學生定員의 自律化

현재 우리나라 私立大學에 있어 學生 登錄金이 大學財政 收入의 거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私立大學의 등록금은 최소한 物價上昇率 수준으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국민 소득 상승률보다 낮은 低納入金 정책이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低所得層의 사립대학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부담이 과중한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國庫支援金이나 학교 법인에서의 轉入金 등의 증가로 사립대학의 학생이 부담하는 학생 등록금의 비중이 사립대학 재정 수입에서 대폭 낮아질 때까지는 大學의 質과 教育機會 均等を 위하여는 당분간 등록금의 수준은 적어도 物價引上率 범위내에서 引上하고 우수한 低所得層 學生에게 獎學金, 學費減免, 貸與獎學金 등 학비 보조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어장학금 제도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못한다는 학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專攻系列別로 학생 등록금의 수준을 다양하게 책정하여 대학의 專攻別 競爭體制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學生定員도 대학의 자원에 맡겨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납입금 수준과 함께 대학의 재정 수입의 확보 또는 증대와 연결, 자율 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의 각 전공별 獨立採算制의 도입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專攻別·學科別 또는 單科大學別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본다.

(2) 政府 國庫 支援의 대폭 확대

현재의 私立大學 財政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日本이나 美國 등 선진 외국의 私立大學의 정부 보조금 비율 약 20% 상당 등을 감안한 최대

한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립대학에 대한 政府의 財政 支援이란 대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教授·研究·社會奉仕라는 大學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國庫로부터 부담하여 주는 일종의 行政行爲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사립대학에 國立大學과 같이 재정 지원 및 보조를 해야 한다는 當爲性 내지 主張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로 大學의 教育 效果가 社會統合, 社會充員, 社會革新 내지는 社會移動 촉진 등에 크게 기여하고, 둘째로 대학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受益者負擔原則에 따라 조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각종 물가 통제, 국민 부담의 능력 한계 등 국가 정책 입장에서의 각종 직·간접적인 통제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제한이 있으며, 세째로 政治·社會·經濟的인 環境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각종의 급격한 소요 재원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고 지원의 당위성을 고려하여 사립대학의 교육상 필요한 實驗 器具 등 教育用 資本的 支出에 상당하는 부분만이라도 적극 지원해야 되리라 본다.

(3) 收益用 基本財産의 確保와 收益力 提高에 따른 學校法人 轉入金의 増大

私立大學의 경우 大學 維持財團인 學校法人 轉入金 비율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 즉 全體 學校 財政 收入豫算 중 10% 이상으로 法制化하여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실정에서 學校財團 轉入金의 증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收益用 基本財産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정부의 積極的이고도 金融政策的인 支援이 필요하며 또한 이미 확보된 수익성 기본 재산의 收益力 提高에도 적극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 재산의 最低基準額을 현행 學生定員當 200,000 원에서 최소한 2배 이상 배증하도록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法人의 轉入金을 증대시키도록 법적인 제약을 가해야 되리라 본다. 또한 수익성 기본 재산은 그 활용에 있어 投資의 多角化를 유도하여 安定성과

收益性을 더욱더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법인의 安定的인 收益性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政府의 財政的인 支援도 필요하리라 본다.

#### (4) 寄附入學制의 導入

私立大學의 財源 확보를 위한 또하나의 방안 으로서는 大學入學을 전제로 하는 寄附入學制의 도입이다. 이 기부 입학 제도는 선진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여 私學 發展의 決定的인 役割을 해 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리 국고 지원이나 수익성 재산의 활성화를 이룬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 사립 대학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사회적 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기부금 입학제를 채택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대학 발전에 전부 투자한다면 커다란 성과를 얻으리라 생각된다. 당초 기부 입학제가 처음 거론 될 때보다 현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부 입학 제 수용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전혀 무모한 제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5) 經營合理化에 의한 管理費用의 節減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財政 支出 項目 중 經常的인 지출에서 차지하는 人件費와 管理運營費는 각각 전체 재정 지출의 45.7%와 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재정 지출 중 收入 對償에 의한 支出을 差減한 후의 인건비 비율은 실제 재정 지출액의 50% 이상이 된다. 더욱이 인건비는 최근 職員勞組와 教授協議會의 결성과 활성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관리 운영비도 학교 규모의 대형화, 학생 수의 증가, 교직원 수의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그 증가 폭이 상당히 큰 실정이다. 따라서 合理的인 人力 管理에 의한 인건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學校 行政의 能率化를 위한 단순화·표준화 등을 과감히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 운영비의 절감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학금 등 學費減免 비율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學費減免 등 장학금은 될 수 있는 한 외부 기관, 즉 사회적인 지도급 인사나 동창회, 기업체 등의 각종 기부금 형태의 지원을 받아 집행함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고정 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資本的 支出도 그 취득의 妥當性을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제정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優先順位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結 言

大學行政 責任者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뺏는 요인으로는 財政 문제(25%), 人件 문제(20%), 學生指導 문제(18%) 그리고 教授 確保(16%) 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즉 오늘날 私立大學은 合理的으로 經營하려고 노력하는 頭腦集團體이며, 더 이상의 靜態的인 法的인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 원하지 않고 나아가 大學인 동시에 研究所의 集團, 職業訓練所, 社會事業 및 社會運動 推進 機關 그리고 스포츠 센터, 서비스 센터이기를 바라는 이른바 멀티버시티(multiversity)이고자 한다. 따라서 法은 졸업생, 기부자, 재단, 감독청, 기업, 노조, 학생, 교수, 지역 주민 등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大學社會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學園의 安定과 自律的인 運營을 위해 政府는 명실 공히 私立大學이 公開的으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民族을 이끌어 갈 指導者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와 감독권의 행사 범위를 좁혀 나가야 하며, 私立大學은 설립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그 공공성 양양은 물론 自主性을 확보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私立大學 財政에 있어서 문제점을 制度的인 측면과 實質運營의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여 보았다.

制度的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大學의 財政 문제는 豫算의 編成 및 執行에 있어서 감독 관청으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大學行政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平教授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학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시 平教授會議의 심의·의결 또는 종전의 財務委員會를 발전적으로 확대·부활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인 총장이나 학장이 확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大學財政 및 會計에 있어 외부 감사를 포함한 完全公示制度를 도입하여 대학 재정 및 회계의 公正性을 확보하고 또한 건전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公信力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특례 규칙을 수정·보완하여 등 특례 규칙이 명실상부한 사립대학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기업 회계 제도와 같은 發生主義에 의한 完全複式簿記制度의 도입에 의하여 대학 재정 상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대학 재정의 올바른 운영 성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學校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産의 最低基準額을 최소한 2 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고 또한 學校法人의 轉入金을 일정 비율(최소한 10%) 이상으로 강제화할 것 등이다.

實質運營의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學生 登錄金을 최소한 物價上昇率 이상으로 조정하여 인상하고 大學의 定員도 自律적으로 私立大學에 일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專攻別 競爭體制가 되도록 差等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政府 國庫支援을 대폭 확대(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세째, 學校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産을 될수록 많이 확보하도록 政策的인 支援을 하고, 또한 확보된 수익용 기본 재산의 收益力을 최대한 제고하도록 하여 學校法人의 轉入金을 증대시키고, 學校法人의 轉入金을 일정 비율 이상 強制化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선진국에서 현재 채택하여 사학 발전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寄附金 入學制度를 채택·도입하여 私立大學의 財政을 튼튼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私立大學의 運營에 있어서 經營 合理化를 통하여 인건비, 관리 운영비, 고정 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학비 감면과 장학금 등의 학생 경비도 외부 기부금에 의한 지출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私立大學의 財政的인 負擔을 合理的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대로 改善이 이루어진다면 최근 私立大學의 財政 문제로 提起되어 온 여러 사항이 무난히 해결되어 건전한 私立大學의 發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